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고 성 군
(기획감사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18. 2. 6.(화) ~ 2. 8.(목), 3일간
- 감사대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감사인원: 기획감사실장 외 4명
- 감사범위: 2016. 3. ~ 2018. 2. 감사일 현재까지 상족암군립공원 사업소 부분(특정)업무 전반
- 주요 감사내용
 - 각종 주요시책, 공약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 예산회계분야
 - 공사계약 및 집행 분야
 - 물품구매 분야
 -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분야 등

II. 감사성과

행정상·재정상 조치

| 구분 | 행 정 상 (건) | | | | 재 정 상 (건,원) | | | |
|----------|-----------|----|----|----------|-------------|---------|---------|----|
| | 계 | 시정 | 주의 | 현지 조치 | 계 | 회수 | 감액 | 기타 |
| 처분 요구 | 9 | 4 | 3 | 2 | 건수 | 1 | 1 | |
| | | | | | 금액 | 560,000 | 560,000 | |

- 신분상 조치: 훈계 2명, 주의 11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 일련 번호 | 건 명 | 요 구 내 용 | | | 비고 |
|----------|------------------------------|---------|-----|---------|---------|
| | | 행정상 | 재정상 | | |
| | | | 구분 | 금액(원) | |
| 1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유재산 지목변경업무 소홀 | 시정 | | | |
| 2 | 상족암군립공원 계단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 시정 | 회수 | 560,000 | |
| 3 | 고성공룡박물관 등록표시 의무 불이행 | 시정 | | | |
| 4 | 정부수입인지 관리업무 소홀 | 시정 | | | |
| 5 | 시설공사 하자 최종검사 업무 소홀 | 주의 | | | |
| 6 | 물품 구매 전 계약심사 미이행 | 주의 | | | |
| 7 |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자 서명 누락 | 주의 | | | |
| 8 | 예산 집행과목(공공운영비 201-02)집행 부적정 | 현지조치 | | | |
| 9 |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증서 확인의무 소홀 | 현지조치 | | | |
| 합 계 | | 계 | 9 | 계 | 560,000 |
| | | 시정 | 4 | 회수 | 560,000 |
| | | 주의 | 3 | 추징 | 0 |
| | | 현지조치 | 2 | 기타 | 0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6 ~ 2017 | 시정 | - | - | - |

제 목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유재산 지목변경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구분 | 지번 | 현재지목 | 비고 |
|-------|-------------|------|----|
| 공룡박물관 | 하이면 덕명리 산31 | 임야 | |
| | 하이면 덕명리 82 | 전 | |
| 주차장 | 하이면 덕명리 95 | 답 | |
| | 하이면 덕명리 102 | 답 | |
| | 하이면 덕명리 103 | 답 | |

【위법·부당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2004.5.15. 공룡박물관 및 주차장이 준공되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목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2018.2. 감사일 현재까지 전, 답, 임야의 상태로 지목을 정리 하지 않은 채 두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상족암군립공원 내 지목변경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지목변경 완료 시(공사 중 토지 제외)까지 매분기 추진상황을 제출하며,
- 향후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2 | | 감사담당자 | | | |
| | | 직급 | 지방행정주사 | 성명 | @@@ |
| 소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7 | 시정 | - | - | - |

제 목 : 상족암군립공원 계단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황】

| 공사명 | 위치 | 사업량 | 공사비(천원) | | | 공사기간 | 도급자 |
|-------------------|------------|--------------------------------|---------|--------|-----|-------------------------------|----------------|
| | | | 계 | 도급액 | 관급액 | | |
| 상족암군립공원 계단보수공사 | 하이면 덕명리 | -목재계단 L=11.2m -계단난간 L=22.4m | 17,100 | 17,100 | - | 2017.2.22. ~ 2017.3.27. | ##조경 \$\$\$ |

-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서 작성 시 공사용 자재를 검토할 경우에는 설치 자재의 규격·성능·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제2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숙지하여 성실히 감독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상족암군립공원 사업소에서는 2017.2.22. ##조경 \$\$\$와 계약 체결하여 2017.3.27. 준공처리한 상족암군립공원 계단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목재계단설치 공종 설계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녹막이페인트칠 및 조합페인트칠 수량을 각각 49.9㎡, 12.4㎡를 과다 산정하여 총 560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과다 지급한 사업비 560,000원을 회수조치 하고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3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6 ~ 2017 | 시정 | - | - | - |

제 목 : 고성공룡박물관 등록표시 의무 불이행

1. 위법·부당내용

○ 고성공룡박물관 등록현황

| 명 칭 | 종류(유형) | 소재지 | 설립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
|---------|--------------|------------|--------|--------|------------|------|
| 고성공룡박물관 | 제1종 전문박물관 | 하이면 덕명리 85 | 고성군수 | 고성군수 | 2005.11.15 | 제24호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제1항에서는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을 공립 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은 또는 미술관은 국민의 박물관·미술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간판, 각종문서, 홍보물,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등록표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00시·도 등록 제00호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상족암군립공원관리사업소장은 공룡박물관 각종 홍보물 및 공룡박물관 옥외간판,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경상남도 등록 제24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박물관 홈페이지 및 옥외간판에 박물관등록을 표시하고,
- 향후 홍보물 제작 시 등록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4 | 감사담당자 | | | | |
| | 직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명 | @@@ | |
| 소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6 ~ 2017 | 시정 | - | - | - |

제 목 : 정부수입인지 관리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명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일 | 계약상대자 | 인지세액 (원) | 첨부 여부 | 소인 여부 | 비 고 |
|---------------------------------------|--------------|-------------|-----------------|-------------|----------|----------|--------|
| 공룡박물관 생명환경홍보판매장 창호공사 | 15,700 | 2016.04.01. | *** | 20,000 | 누락 | - | |
| 고성박물관 내부 벽면 그래픽 설치공사 | 10,000 | 2016.04.19. | **** 연구소 | 20,000 | 누락 | - | |
| 토피어리공원 정비(캐릭터공룡 제작구입) | 14,950 | 2017.12.13. | ***** | 20,000 | 누락 | - | |
| 공룡박물관 작동공룡보수공사 | 19,700 | 2016.06.17. | *** 팩토리 | 20,000 | 첨부 | 누락 | |
|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충공사 실시설계용역 | 19,800 | 2016.05.31. | (주)**엔지니 어링 | 20,000 | 첨부 | 누락 | |
| 고성공룡박물관 수장고 내 전시대 설치 | 18,530 | 2016.10.24. | (주)***** 시스템 | 20,000 | 첨부 | 누락 | |
|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부지 정비공사 | 19,600 | 2017.02.23. | (주)**건설 | 20,000 | 첨부 | 누락 | |

【위법·부당내용】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제1항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35만원
- 또한, 2013.12.19.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여 기존의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가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여 수입인지 횡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수입인지 판매 웹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불임의 현황과 같이 ‘공룡박물관 생명환경홍보판매장 창호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정부수입인지 첨부를 누락하였으며, ‘공룡박물관 작동공룡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인지를 받아 전자적 소인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계약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 확인 업무를 하지 않는 등 수입인지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공룡박물관 생명환경홍보판매장 창호공사’ 등 3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누락된 정부수입인지 60,000원을 첨부토록 조치하고,
- ‘공룡박물관 작동공룡보수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소인을 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5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6~2017 | 주의 | - | - | - |

제 목 : 시설공사 하자 최종검사 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1. 가. 에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3. 다. 에 “계약상대자는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 하자 검사에 입회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2016.3.~ 2018.2. 감사일 현재까지 ‘상족암군립공원 야영장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 최종검사 시행을 위한 시행공문 및 하자 최종검사 실시 내역이 없는 등 하자 최종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6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6 | 주의 | - | - | - |

제 목 : 물품 구매 전 계약심사 미이행

1. 위법·부당내용

일천만원 초과 물품구매 현황[계약심사 미이행]

| 연번 | 건 명 | 물품 내역 | 예정가격 (천원) | 집행일자 | | 계약상대자 | 비고 |
|----|------------------------------------|--|--------------|-------------|-------------|----------------|--|
| | | | | 품의 | 계약 | | |
| 1 | 야외 기획전시 개최에 따른 공용캐릭터 제작구입 | - 바리오닉스 L=1500, H=800 - 엘라스모사우루스 L=1400, H=800 - 테리지노사우루스 L=1000, H=1000 - 스테고사우루스 L=1300, H=700 각 1ea(총4ea) | 20,200 | 2016.12.13. | 2016.12.14. |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2835 (2016.12.13.) |
| 2 | 미로공원 정비 (공용조형물 제작 구입) | - 람베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에우오폴로케팔루스, 이구아나돈, H=800~1000, L=1200~1600 각 1ea(총4ea) | 18,000 | 2017.1.6. | 2017.1.11. | (주)++++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125 (2017.1.6.) |
| 3 | 공룡박물관 공용캐릭터 제작구입 | - 람베오사우루스 H=1300 - 이구아나돈 H=1300 - 벨로시랩터 H=1000 - 파키케팔로사우루스 H=1300 각 1ea(총4ea) | 21,340 | 2017.2.16. | 2017.2.22. | **아트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898 (2017.2.16.) |
| 4 | 토피어리공원 정비 (캐릭터공용 제작구입) | - 브라키오사우루스 H=1800, L=2300 - 티라노사우루스 H=1100, L=1550 각 1ea(총2ea) | 16,610 | 2017.11.3. | 2017.11.16. |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5697 (2017.11.3.) |

○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19, 일부개정) 제3장 계약심사운영요령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설계변경 증감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규정에 의거 일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는 계약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상기 ‘일천만원 초과 물품구매 현황[계약심사 미이행]’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의 구매·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고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계약심사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물품의 제조원가 또는 실례거래가격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을 확정된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함에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야외 기획전시 개최에 따른 공룡캐릭터’ 등 4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천만원 초과 물품구매 현황 [계약심사 미이행]’의 내용대로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NO. 7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6~2017 | 주의 | - | - | - |
| 제 목 :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자 서명 누락 | | | | | |
| 1. 위법·부당내용 | | | | | |
| 【현 황】 | | | | | |
| 회계년도 | 사 업 명 | 통계목 | 결제방법 | 금액(원) | 비고 |
| 2017년도 | 관용차량유류대금지급(4월분) 등 12건 | 사무관리비 외 | 카드결제 | 4,174,750 | |
|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는 2017년도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상기 12건에 대하여 매출전표 서명란에 카드사용자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p> | | | | | |
| 2. 처분요구 | | | | | |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8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7 | 현지조치 | - | - | - |

제 목 : 예산 집행과목(공공운영비 201-02)집행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 1.비목별 적용기준을 보면
 -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 나.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인터넷비용’ 및 ‘공룡 박물관 유선방송료’ 등은 공공요금이 아닌 수수료 성격으로서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201-02)로 계속 집행하여 예산집행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9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상족암군립 공원사업소 | 2017 | 현지조치 | - | - | - |

제 목 :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증서 확인의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 사업현황

| 회계년도 | 사 업 명 | 통계목 | 금액(원) | 비고 |
|--------|------------------------|------------|-------|----|
| 2016년도 | 공룡박물관 체험장 옥상 연결 데크 재설치 | 시설비(401-1) | 5,500 | |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제1항제 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같은 조례 [별표 1] 기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1]에서는 금1,000천원 이상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체결 시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25,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 체결 시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0.75의 매입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2016.4.8. 계약금액 금5,500천원으로 하여 ‘공룡박물관 체험장 옥상 연결데크 재설치 공사’를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는 데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누락된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보완조치토록하고,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